

Q. 건축구조물(철골)에 FLIK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내화피복을 시공하였을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FILK인증을 받은 내화피복 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UL인증을 받은 내화피복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료는 기본요율에서 할인·할증하여 산정됩니다. 내화구조는 보험료 할인대상이 아니며, 주요구조부 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의 내화구조 여부에 따른 건물의 구조급별 판정(1급~4급)에 따라 보험요율(기본요율)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재 내화피복재 중 FILK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내화피복재는 방재시험연구원(FILK)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만 보험료 할인이 인정되며 UL인증을 받은 제품은 할인대상이 아닙니다.

Q. 아파트 지하 1층에 제연팬룸이 지하주차장 PIT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연팬룸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입문(1.0×2.1 방화문) 설치 → PIT(폭 2.0 이상으로 하여 스플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통과 → 제연룸(방화문 설치)을 설치하였을 경우, 소방법상 설치적합한지, 통과 PIT를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제연팬룸'이 NFSC501A의 '급기송풍기' 설치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제19조(급기송풍기) 4호에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란 주변과 방화구획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 중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구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근이 용이한 곳'은 정상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과 화재 시 비상 운전을 위한 접근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중 두 번째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바닥면적의 의미는 각종 단위의 건축물의 순수 사용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바닥면적의 산입여부는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항 3호 라목의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에 의거 제외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옥내·외 소화전함에 비치되는 소방호스에 대해 내압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주기 : 옥내 3년/옥외 1년) NFPA 1962에 따르면 소방호스가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험 주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옥내·외 소화전에 비치되는 소방호스의 종류와 수압시험 주기에 관해 궁금합니다.

A NFPA 1961_1992 Edition에서 소방호스의 종류는 Attack Hose, Forestry Fire Hose, Large-Diameter Hose, Occupant Use Hose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옥내외소화전 호스는 Attack Hose 또는 Occupant Use Hose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NFPA 1962_1993 Edition에서 Service Test(계속된 가동에 알맞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가동 중 호스에 실시하는 정수압시험)의 주기는 Attack Hose는 가동위치에 놓이기 전 90일 이내와, 그 이후 최소 1년에 한 번씩 테스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ccupant Use Hose는 가동위치에 놓이기 전 90일 이내와, 장착 후 5년 이내 및 그 이후 3년마다 Service Test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Q. 방화구역 내에 임시로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어 소화기를 추가(분말 6.5kg 등)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연성 물질의 발열량 데이터와 소화기 능력단위를 고려하여 적정한 소화기 배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발열량에 따른 능력단위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가연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위험물인 경우,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고 있으며, 특수가연물인 경우 NFSC101에서 지정수량의 50배 마다 1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NFPA 231D,E,F 고무, 면표, 롤페이퍼 저장기준에서도 소화기의 추가설치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이는 '소화기가 재실자 또는 인근의 관계자에 의한 초기소화' 개념으로 위험의 크기가 커지면 추가적인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